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71
----------	-------

발의연월일 : 2026. 4. 16.

발 의 자 : 김남희 · 김기표 · 김원이
김선민 · 박희승 · 이재정
김 윤 · 허종식 · 서미화
남인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치료, 격리비용 증가 뿐 아니라 재원일수 증가 등은 의료적 부담을 넘어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업무가 이관됐으나,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 소관 분류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1조의2제1항 및 제63조제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61조의2 및 제63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4조의3제4항·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

청장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